



제 438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활의 소지·운반 방법 규정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활의 발사 등 금지〉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4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활 관련 현황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15.
3. 회부연월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운반·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활을 소지 또는 운반할 때 활집에 넣거나 포장하고, 화살을 소지 또는 운반할 때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서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하도록 하며(안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안 제74조제1항제2호),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 등을 장전하거나, 화살이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며(안 제17조제6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호).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활의 운반·소지·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조), 활의 정의를 신설하며(안 제2조제6항), 현행법상 석궁과 함께 활을 규정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장 장 제목,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u>그 밖에</u>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u>석궁으로</u>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	제1조(목적) ----- ----- ----- <u>활의 운반·소지·사용 및 그 밖에</u> ----- ----- ----- <u>석궁·활로</u> ----- ----- -----

현행	개정안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이 법에서 “<u>석궁</u>”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생략) 제3조(적용의 배제) ①·② (생략)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u>석궁</u>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u>석궁</u>의 소지와 사용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u>석궁</u>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 ④ (생략) <u><신설></u>	-----.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u>활</u>”이란 활대에 시위를 걸어 사람의 힘으로 시위를 당겼다 놓아 활대의 탄성으로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의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조(적용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석궁·활</u>에-----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 -----<u>석궁·활</u>의----- 제17조(----- -----<u>석궁·활</u>의----- -----)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활(화살을 포함한다)</u>을 소지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및 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활을 지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1. 활집에 넣거나 포장할 것 2.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서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할 것 ⑥ 누구든지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등을 장전하거나, 화살이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운영하는 대회, 행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연·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73조(벌칙) ----- ----- ----- -----. 1. -----

현행	개정안
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 --- 제17조제2항·제4항·제6항 --- -----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4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026년 1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산책을 하던 사람 1~2미터 옆으로 무쇠촉이 달린 80cm 길이의 화살이 날아와 박히는 사건이 발생함. 경찰은 화살을 쏜 사람들에게 특수폭행¹⁾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한 후 같은 해 2월 불구속 송치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살을 쏜 사람들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있던 활과 화살을 꺼내 호기심에 나무를 향해 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개정안 제17조제6항은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활에 화살 등을 장전하거나, 화살이 장전된 활을 조준 또는 발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현행법상 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화살을 장전하여 조준 또는 발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에 따른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미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범죄 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화살을 발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²⁾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다만, 많은 국민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화살을 장전하여
조준 또는 발사하는 행위를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있으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 경찰에서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법원은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져 보행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
적으로나마 불특정 보행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특수폭행치상³⁾을 인정하고 있음.⁴⁾

다음으로, 개정안 제17조제5항은 활과 화살의 소지 및 운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활은 활집에 넣거나 포장하도록 하고, 화살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마개 등으로 감싸서 화살통에 넣거나 포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정안 제74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17조제5항은 활과 화살의 소지 및 운반 방법을 법률에 명
확히 규정함으로써 화살 등의 소지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3)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4. 선고 2021고단1018 판결 [특수폭행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572 판결 [특수폭행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 제17조제5항과 관련해서는 활과 화살 외에도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있지만, 법률에서 소지허가의 대상인 총포 등을 제외하고⁵⁾ 해당 위험한 물건의 소지, 운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활과 화살을 다른 위험한 물건과 달리 법률에 소지 및 운반 방법을 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은 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6항, 제3조제3항, 제3장 장 제목,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활을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 제1조, 제2조제6항 등은 개정안 제17조제5항·제6항 등에 신설된 활과 화살의 소지·운반 방법 및 공공장소의 사용금지 내용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 제1조와 제2조제6항의 개정 필요성은 개정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신설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 판매, 임대, 운반, 소지, 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⁶⁾⁷⁾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활의 운반·소지·사용에 관한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이 현행법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 대상 중 가장 최근인 1995년에 추가된 석궁을 살펴보면, 석궁은 총포 등과 유사한 살상력이 있고 공안상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충격기와 같은 수준으로 제조·판매·수출입·소지·취급 등을 규제하기 위해 추가됨.⁸⁾ 석궁의 경우 총의 조준 및 발사 장치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조준사격이 가능하여 위험성이 높기 때문임.⁹⁾ 석궁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될 때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되어 석궁을 발사하는 행위는 사격행위로 정의되어 있음.¹⁰⁾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법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42조)

8) 내무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면, 1995년 11월

9)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박규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417) 검토보고」 27면, 2021년 8월

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4¹¹⁾는 석궁의 범위에서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음.

해외 입법례로는 영국의 범죄예방법(Prevention of Crime Act 1953)은 공공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며,¹²⁾ 일본 경범죄법 제1조제2호와 제11호¹³⁾는 우리나라의 「경범죄 처벌법」의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12) 영국 범죄예방법 Prevention of Crime Act 1953 Section 1

1 정당한 권한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

1 Prohibition of the carrying of offensive weapons without lawful authority or reasonable excuse.

(1) 정당한 권한이나 합리적인 변명 없이, 그 입증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한,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1) Any person who without lawful authority or reasonable excuse, the proof whereof shall lie on him, has with him in any public place any offensive weapon shall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a) 약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a)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2six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F3£200], or both;

(b)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 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1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b)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4four]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pounds, or both.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Eliz2/1-2/14/section/1>

13) 일본 경범죄법(輕犯罪法)

제1조 좌측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한다.

第一條 左の各号の一に該当する者は、これを拘留又は科料に處する。

2. 정당한 이유 없이 칼, 첩봉 등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를 숨겨 휴대한 사람

二 正当な理由がなくて刃物、鐵棒その他の人の生命を害し、又は人の身体に重大な害を加えるのに使用されるような器具を隠して携帯していた者

11.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부어 넣거나 발사한 자

十一 相當の注意をしないで、他人の身体又は物件に害を及ぼす虞のある場所に物を投げ、注ぎ、又は發射した者

휴기의 은닉휴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 밖에도 경찰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활은 무기가 아닌 운동기구로 분류하고, 공공장소에서 활을 쏘는 행위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보아 각 주법(州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활 소지를 규제하지는 않으나 연방 형법 및 조례를 통해 도심지나 주거지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다만,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제17조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금지되고 소지 시 허가가 필요한 총포등(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총포등과 달리 소지가 금지되지 않는 활은 총포등과 함께 제17조에 규정하기보다는 제17조의2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참고

활 관련 현황 (출처: 경찰청)

□ 활 관련 현황

- (단체) 양궁 종목을 관리하는 단체로 대한양궁협회, 국궁에는 대한궁도협회가 있으며,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 단체임
- (인원)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매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인원은 양궁·국궁 포함 연 13,000여명 수준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양궁 선수 등록자(명)	2,517	2,764	2,834
국궁 선수 등록자(명)	10,634	11,040	10,085
합 계	13,151	13,804	12,919

- (유통 수량) 국궁은 사용자가 약 4~5만명임을 감안할 때 최소 5만정 이상으로 추정, 양궁의 유통 수량은 확인이 불가능

※ 국궁은 활의 몸체를 이루는 ‘활대’가 하나의 부품으로 구성된 반면 양궁의 경우 활대가 조립식이므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부품만 반입한 뒤 조립하여 만들 수 있어 유통 수량 확인이 불가

- (사용 장소) 국궁은 대한궁도협회에 400개의 활터가 등록되어 있고, 양궁의 경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9개소*가 있으며 그 외 연습장 약 300개가 있으나 학교 운동장 등에 흙더미·그물망 등을 갖춘 채 운영하는 수준(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음)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경북에 1개소씩 존재